

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39조제3호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설치위치

1) 너비 방향

2개가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

2) 높이 방향

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,200밀리미터 이하일 것

나. 관측각도

1) 후퇴등 발광면은 상측 15도,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2)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. 다만, 2개가 설치된 경우 외측 45도, 내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.

다. 조사 방향

후퇴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

라. 작동조건

원동기의 시동 또는 정지장치가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, 자동차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인 경우에만 점등될 것

마. 후퇴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
2. 광도는 별표 6의10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